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0년 4월)

□ 제공 목적

- 최근 위원회에서 추진한 주요 반부패 정책이나 활동을 국내 기업인 등에게 홍보하여 저평가된 대내외 국가 이미지 개선 등에 기여

□ 주요 내용 (총 4건)

- ① 올해 1분기 중앙부처 제·개정 법령 425개 중 부패유발요인 30개(65건) 개선 권고 ('20.4.17.)
- ② 5만 여건의 '코로나19' 관련 민원 데이터, 방역대책 수립 및 국민불편 해소에 한 몫 (20.4.13.)
- ③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①] '부정청탁'이란 이런 것('20.4.9.)
- ④ 범정부적 협력으로 나라재정 누수 방지한다 ('20.3.30.)

올해 1분기 중앙부처 제·개정 법령 425개 중 부패유발요인 30개(65건) 개선권고

- 2013년부터 6년간 해당기관 개선권고 89.3% 이행 -

(2020. 4. 17, 국민권익위)

올해 1분기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425개 중 30개 법령에서 65건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어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개선 권고(23개 법령, 58건)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 알권리 보장, 공정성 저해 요인까지 세심하게 평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425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0개 법령, 6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개선권고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22건, 33.8%) ▲공적 업무 추진 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15건, 23.1%) ▲행정업무의 위탁·대행 시 요건, 범위,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10건, 15.4%) 등이다.

< 평가분야(기준)별 개선권고 현황 >

평가분야(기준)		권고수	평가분야(기준)		권고수
준수	1. 준수부담의 합리성	-	행정 절차	7. 접근의 용이성	2
	2. 제재규정의 적정성	5		8. 공개성	2
	3. 특혜발생 가능성	-		9. 예측 가능성	7
집행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22	부패 통제	10. 이해충돌 가능성	15
	5.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10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2
	6. 재정누수 가능성	-		합 계	65

사례를 보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은 국민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행태, 의료인력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기관·내용·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기관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인력·장비를 갖춰야 하는지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만 그 범위·시기·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공개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건의료 실태조사 기관의 자격요건과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범위·시기·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보건의료 업무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있어 드론 산업협의회 민간위원의 자격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만 규정해 자격요건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드론첨단기술에 대한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도 정해지지 않아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계 및 실무 경험 등을 고려해 민간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드론첨단기술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을 미리 고시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새만금사업법 시행령」은 새만금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특례, 임대료 감면 등의 적용대상을 연구기관까지 확대하면서 특례규정 대상인 연구기관의 종류를 모호하게 규정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례규정 적용대상인 연구기관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발견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이 법령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지속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16건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개선권고를 했으며, 이 중 입법철회 등으로 관리 종결된 293건을 제외한 1,623건 가운데 1,450건이 이행(89.3%)됐다.

이는 전년도 이행 점검 시 확인된 이행률 85.7%보다 3.6% 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향후에도 적극적인 기관 간 협의와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배포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이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5만 여건의 ‘코로나19’ 관련 민원 데이터, 방역대책 수립 및 국민불편 해소에 한 몫

- 권익위, 확진자 발생 후 2개월간 민원 52,118건을 분석,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 개선 추진 -

(2020. 4. 13, 국민권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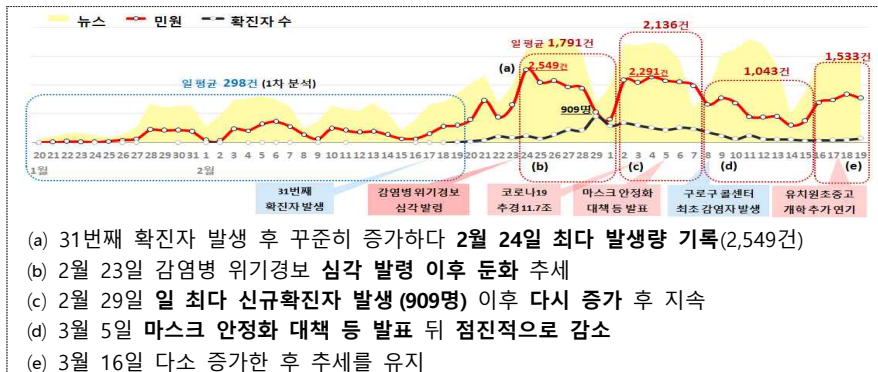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 1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2개월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코로나19」 관련 민원 52,118건을 분석해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들이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을 개선해 가고 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국민권익위는 매년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민원을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정책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미세먼지가 악화됐던 시기에는 관련 민원을 분석해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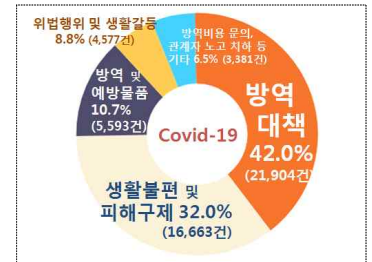
<「코로나19」 관련 민원발생 추이(1.20.~3.19.)>



민원분석 결과와 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1,200개 기관에 제공하였고, 관계기관은 민원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민 불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코로나19」 관련 민원의 유형은 ‘방역대책’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42.0%),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불편 및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민원(32.0%), 마스크 등 ‘방역 및 예방물품’ 관련 내용(10.7%),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에서 파생된 ‘위법행위 및 생활갈등’ 관련(8.8%) 순이었다.

<「코로나19」 관련 민원유형>



(방역대책) 방역대책이 강화되면서 초기에 비해 민원이 많이 줄어든데 주로 집단시설 폐쇄 및 교회예배 등 집단모임금지, 클럽·외국인카지노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 방역 강화 및 계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개학연기, 장애인에 대한 코로나19 정보제공 편의 요구 등이었다.

<주요 민원사례>

[○○ 클럽 계도 요청]

코로나19로 인하여 ○○클럽 휴업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서울 코리아빌딩 이후로 불안감이 커집니다. 제가 사는 마포구에 클럽들이 많다보니 대구처럼 서울도 퍼질까봐 두렵습니다. (3.18.)

[외국인 카지노 위험]

외국인 카지노 재직 중입니다. 마스크를 사용하지만, 손님과 50c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게임을 진행하고 대화를 합니다. 국가에서 일회성 이벤트는 제한을 해달라고 하는데, 매주 100명 이상 모이는 이벤트를 좁은 공간에서 실시합니다. (2.29.)

[휴교 장기화에 따른 장기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개학을 1주 연기, 2주 연기에 이어 또다시 2주 연기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3.13.)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3월 총리담화문을 통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고 집단모임 자제 제도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생활불편 및 피해구제) 경기 악화로 인한 중소기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피해구제 방법 다양화와 신속한 지원 요구, 결혼식·돌잔치·여행 등의 취소·연기에 따른 수수료 및 환불 관련 분쟁, 각종 시험 연기·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구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병원·보건소 이용자의 불편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주요 민원사례>

[신용보증재단 근무인원 늘여주세요]

자영업을 하는 30대입니다. 운영이 너무 힘들어져 신용보증재단에 지원사업 신청을 하려했습니다. 직원들이 야간근무에, 7시 출근해도 신청인원이 워낙 많아 최소 한 달 걸린다고 합니다. 한 달 이상 걸리면 저희들은 타격이 너무 큼니다. 인원확충으로 조금이라도 일찍 지원받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2.25, 대구시)

[코로나19 관련 긴급 자금 조속 지원 요청]

코로나19로 금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대비 100% 감소하여, 각종 지원금 신청을 하였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사업을 접으라는 것인지 정말 힘듭니다. (3.5.)

[전문자격사 시험, 영어점수 제출 연기 등 대책 필요]

토익 등 점수를 요하는 전문자격사 시험의 경우, 토익 등 시험연기로 점수를 보장받을 기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험 연기로 시험 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여 점수 제출기한까지 1회 만에 점수를 달성해야 하거나, 시험 미응시로 점수를 제출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3.6.)

[보건소 대신 주민센터에서 철분제 제공해 주세요]

최근 철분제가 떨어져 보건소에 연락하니 현재 임신부지원 사업에 투입될 직원이 모두 선별진료소로 가서 보건소의 지원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렇게 차선책없이 못 받게 중단해 버린 부분들로 피해가 큼니다. (3.19.)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활불편 및 피해구제’ 관련 민원이 늘어나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네 차례 개최하고 국민 불편 해소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인 금융지원 상담인력과 신청창구를 확대(3.2.)하는 한편 현장실사 생략 등 절차를 간소화(2.25.)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하였고,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자금 2,627억원을 지원하였다.(3.25.~4.10.)

또 고용노동부는 어학시험 연기로 각종 전문자격사 응시요건 충족이 어렵게 된 국민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어학시험 성적 제출기한 연장 조치를 시행(3.20, 3.25)하고, 내일배움카드 등 각종 취업·이직 지원금 사용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내일배움카드 훈련개시일 연기 시 유효기간 연장 조치(3.31.)를 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난임시술비 신청, 철분제·엽산제 수령 등 코로나19로 중단된 보건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보건소 방문 없이 난임부부와 임신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분쟁이 감소할 수 있도록 예약업·연회시설운영업 등 분쟁해결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방역 및 예방 물품) 해외거주 가족 및 국내 회사 소속의 해외 선원에게 마스크 통관 허용, 마스크 구매가 힘든 중증질환자나 임신부 등에 대한 공적마스크 배포 방법 개선 등이었다.

이 또한 초기에는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방역물품 사용 요구가 많았으나, 공적마스크 등 마스크 수급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변화가 있었다.

<주요 민원사례>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마스크 보내게 해주세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중국에 전세기도 띄워서 데리고 오는 판에 내 자녀한테 마스크 20개도 못 보낸다니 말이 되나요. (3.14.)

[선원용 마스크 보급 요청]

마스크 수출통관이 어렵게(사실상 불가) 되어 당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박의 선원들에게 보급이 어려워 졌습니다. 특히 국제 항해에 종사하면서 국내항에 기항하지 않는 선박의 경우, 마스크 보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선박에 보급될 마스크에 대하여는 수출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5.)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거주가족에 대한 마스크 해외 배송을 점진적으로 확대 중이고, 국제 항해선박 직원에 대한 마스크 해외반출을 예외적으로 허용(4.5.)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부, 장애인 등에 대해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하여 마스크 등을 미끼로 한 피싱사이트 등 방역물품 판매사기 등 위법행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신고와 과장광고, 가짜뉴스 및 불확실한 정보 전파행위에 대해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도 있었다. (위법행위 및 생활갈등 8.8%)

이에 법무부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저해사범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력 대응을 시행(2.28.)하고 경찰청은 일선 경찰관서에 마스크 쇼핑몰 유사사이트 개설 등 다중 사기피해 관련 집중수사를 지시(3.10.)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민원분석 결과는 국민들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①] ‘부정청탁’이란 이런 것

- 부정청탁의 정의 및 범위, 신고 후 처리과정 등 소개 -

(2020. 4. 9,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4년째를 맞아 국민의 ‘부정청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법이 규정한 부정청탁의 정의와 범위, 신고처리 절차, 유권해석 및 판례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연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중 65.6%가 ‘부정청탁’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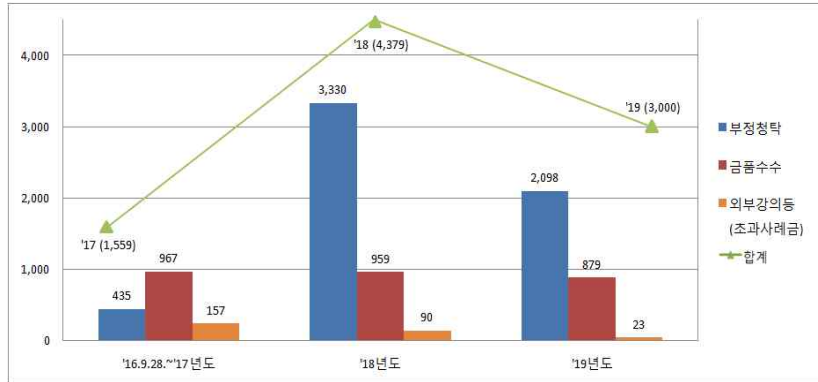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9.28. 시행

**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2016.9.28.~2019.12.31.) 총 8,938건 중 부정청탁 5,863건(65.6%), 금품등 수수 2,805건(31.4%), 외부강의등 270건(3%)

청탁금지법은 연고·온정주의에 기반을 둔 부정청탁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올해 3월 중순까지 국민권익위 누리집에는 396건의 부정청탁 관련 질의가 접수됐다. 특히 2018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등을 계기로 부정청탁 행위를 엄격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돼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총 위반신고의 70%는 부정청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각급 공공기관 시기별 신고 접수 추이 >



※ 각급 공공기관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취합한 결과로, 각급 공공기관에 직접 접수되거나 국민권익위 또는 수사·감사기관에 접수된 신고 건을 모두 포함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한다.(법 제5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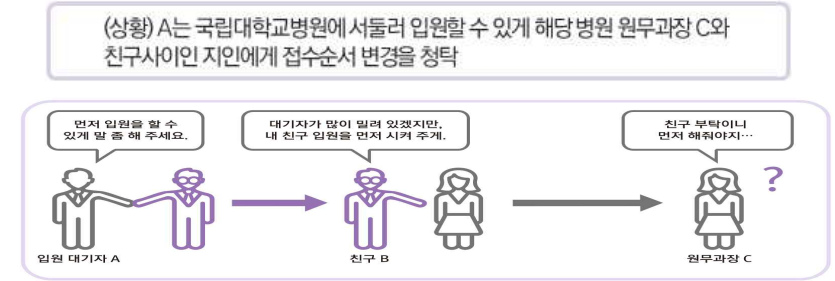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실제 해당 업무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결재선상 또는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유형별로 열거돼 있다.

인·허가, 채용·승진 등 인사, 계약, 보조금, 입학·성적 등 학사업무, 병역 등 법에 명시된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면 부정청탁이 성립한다.(붙임 참고)

이 중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포함된다.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상황(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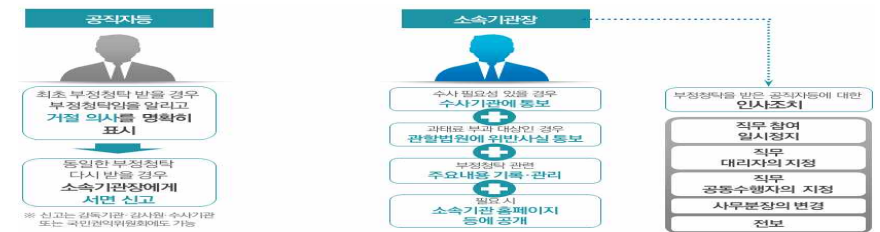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법 제6조)하지 않더라도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제재 대상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은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만약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신고를 받으면 사실 확인과 제재 요청 등의 조치와 함께 해당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직무에 참여하는 것을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는 등의 인사조치(법 제7조제4항)를 할 수 있다.

< 부정청탁에 대한 공직자등의 대응 및 소속기관장의 조치 >



부정청탁이 있었고 그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제3자를 통해 또는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급 공공기관의 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거나 부정청탁을 예방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례의 내용과 조치사항을 청렴포털,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법 제7조제7항)해 유사한 위반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 부정청탁 관련 법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

위반행위		제재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과태료(1천만 원 이하)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	과태료(2천만 원 이하)
	·공직자등	과태료(3천만 원 이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통합검색(1398.acrc.go.kr)’에서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규정과 관련 질의회신 등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을 방문해 편리하게 묻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청탁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회신·판례를 인·허가, 채용 등 인사, 학교현장 등 분야별로 분석해 알기 쉽게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학위취득·인턴채용과 같이 현행 청탁금지법 상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분야를 ‘ 국민생각함’ 의견 청취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연고관계나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가 왜곡되는 부정청탁관행을 차단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부정청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부정청탁을 하는 것도, 들어주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 청렴한 사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법정부적 협력으로 나라재정 누수 방지한다

- 제6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개최,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개선 위한 9개 중점과제 추진상황 점검

(2020. 3. 30, 국민권익위)

정부는 지난 3월 ‘제6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여, 생활적폐 개선 중점과제에 대한 올해 1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이번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서면으로 진행됐다.

협의회에서는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진행 상황 ▲공공재정 환수법 시행 상황 ▲갑질 근절 대책 추진성과 및 이행상황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 등을 공유하고 이어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정부는 2018년 12월 구성된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소관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또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2월 18일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2020년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등 각종 보조금 관련 시스템의 통합·연계·정보공유를 통해 선제적으로 부정수급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검증되지 못한 부정수급 분야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해 고의·거짓 등에 의한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가 1분기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소관부처별 생활적폐 개선 과제는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었다.

< 생애주기별 생활적폐 9개 과제 >

유아·청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 권력유착	✓ 사익편취
①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교육부)	②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국민권익위) ③ 공공분야 갑질 근절(국조실)	④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7재부) ⑤ 지역 토착비리 개선(법무부) ⑥ 탈세행위 근절(국세청) ⑦ 보험수급비리 근절(복지부) ⑧ 재건축 재개발비리 근절(국토부) ⑨ 안전분야 부패 근절(행안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지난 1월 2,5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1/3은 최근 우리 사회의 갑질이 개선됐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44.8%가 그 개선 원인을 정부의 노력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갑질 근절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분야 갑질 행위 엄정 처리 및 공개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진행해 올해 2월 1차 전수조사를 마치고 현재 2차 심층조사를 앞두고 있다.

또 공공기관이 채용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위탁채용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채용위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위탁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지난해 12월 2019년 정부합동 부정수급 집중 점검(13개 부처, 20조원 규모)을 실시해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 927억 원에 대한 환수결정을 했다.

또 올해 1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포상금의 한도를 폐지하고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도 개정해 부정수급 고발 및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고 부정수급 환수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탈세행위 근절) 고소득사업자 등의 고질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8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확대했다.

*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또 2월부터 전관특혜 전문직, 고액 입시학원, 사무장 병원 등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증여 등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엄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 이건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는 변함없이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늦추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범정부적으로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